

서울 도봉구 도봉로 164길 24, 한가람빌딩 2층  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 중산빌딩 4층

전화 : 02-949-7737  
팩스 : 02-949-7738

수 신 : 강남구청 문화체육과

참 조 : 담당자 민청(☎ 02-3423-5932)

제 목 : 질의에 대한 회신 [자문요청서(체육시설의 운영 위탁기간 관련)]

### [질의의 요지]

-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·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, 이러한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(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, 제2항)
- 현재 구립체육시설 7개소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, 위탁기간 3년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, 위탁기간의 연장을 1년이 아닌 3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는지 여부

[답변]

●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기간 연장(3년) 가부

1. 답변요지

강남구청장은 구립체육시설 7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음.

2. 답변이유

가.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

헌법 제117조 제1항,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은 “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데, 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,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
나.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법적성질

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 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,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(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4누12302 판결 등 참조)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은 “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강남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,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,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 체육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권한(제3조),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(제4조),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(제9조, 제10조), 체육시설의 운영위탁(제14조) 등 강남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받았는바, 위 조례 규정은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다. 소결

- 위 조례 제14조 제1항 또한 강남구청장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,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위탁기간에 관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, 구청장은 3년의 위탁 기간 결정에 관한 재량을 갖습니다. 이는 위 규정의 형식, 체재, 문언을 고려할 때, 위탁기간 연장에 있어서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,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도 그와

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.

- 강남스포츠 문화센터, 구민체육관, 대진체육관, 봉은테니스장, 포이테니스장, 구민회관 체육교실은 최근 3회에 걸쳐 3년 단위로 위수탁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.
- 이러한 위수탁계약 체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,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, 구청장은 3년의 기간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재량권을 갖고, 그 연장시에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조례 및 관계법령의 해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따라서 강남구청장은 구립체육시설 7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*이상과 같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.*

*다만 이는 본 변호사의 견해이고, 견해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

2019. 11. 26.

법무법인 한가람  
변호사 정종선  
변호사 한승진